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89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270,210원, 지방교육세 1,717,850원, 농어촌특별세 858,920원 합계 22,846,980원(가산세 포함)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9. 7. 16.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redacted]시 B 제이동 제4층 제이4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경기도조례 제42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8. 30.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20.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조례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0,270,210원, 지방교육세 1,717,850원, 농어촌특별세 858,920원 합계 22,846,980원(가산세 포함)의 지방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4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60%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원고가 종전에 영위하던 것과 동일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통해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1호)'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7조 제2항은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4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 16.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5.부터 2015. 7. 24.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8. 30.경 소외 회사에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동시에 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0%의 주식도 원고의 처인 D가 보유하고 있으며, 소외 회사가 원고와 동일·유사한 업종(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익의 대부분을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의 매출로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사업자등록번호(원고 : E / 소외 회사 : F), 개업연월일(원고 : 1988. 1. 5. / 소외 회사 : 2013. 8. 30.)을 달리하는 등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은 취득자와 사용주체를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규정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본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4

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서 위 설립자가 당초의 취득목적과 같은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반면에, 제2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 삼고 있어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임대 등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의 영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위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위 입주자로부터 지식센터를 임차한 자가 당초 입주자가 위 센터를 취득한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입법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사용'을 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원고 개인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4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김영석

판사 민경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4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4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경기도조례 제42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4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끝.